

2027학년도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주요 개정 내용

유아교육과

1. 개정 취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27학년도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을 부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의 기본 방향

현행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고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용어 변경

- 변경 사유: 차례와 본문의 통일성 도모
- 변경 내용: 특별 채용-> 경력경쟁채용
- 변경 방안
 - ‘특수학교(유치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차례 제9장의 용어를 아래와 같이 변경

(전) 차례 - 제9장 사립 특수학교 교사 **특별 채용**
(후) 차례 - 제9장 사립 특수학교 교사 **경력경쟁채용**

나. 띄어쓰기 수정

- 변경 사유: 본문 내용의 통일성 유지 및 가독성 증진
- 변경 내용: (유치원) 제7조 (**전보기준** 공개) -> 제7조 (**전보 기준** 공개)

제7조

(전) (**전보기준** 공개) 전보주관 교육지원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후) (**전보 기준** 공개) 전보주관 교육지원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 변경 내용: (유치원) 제9조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의 근무기간은~
-> 제9조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의 근무 기간은~

제9조

(전)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 근무기간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후)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 근무 기간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 변경 내용:(특수) 제8조(전보기준 공개)-> 제8조(전보 기준 공개)

제8조

(전) (전보기준 공개) 교육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후) (전보 기준 공개) 교육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 변경 내용:(특수) 제24조(전보) ①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 제24조(전보) ①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 (전보) ①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후) (전보) ①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변경 내용:(특수) 제39조(종류 및 방법) 사립특수학교의~
-> 제39조(종류 및 방법) 사립 특수학교의~

제39조

(전) (종류 및 방법) 사립특수학교의 폐교~
(후) (종류 및 방법) 사립 특수학교의 폐교~

- 변경 내용:(특수) 제40조 (대상교사) ① 서울 시내 소재 사립특수학교에
-> 제40조 (대상교사) ① 서울 시내 소재 사립 특수학교에

제40조

(전) (대상교사) ① 서울 시내 소재 사립특수학교에
(후) (대상교사) ① 서울 시내 소재 사립 특수학교에

- 변경 내용:(특수) 제41조 (경력경쟁채용시기)-> (경력경쟁채용 시기)

제41조 (전) (경력경쟁채용시기)

(후) (경력경쟁채용 시기)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산·구 대조표

현행(2026학년도)	개정안(2027학년도)	개정 사유
2026 학년도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2027 학년도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연도 수정
제7조 (전보기준 공개) 전보주관 교육지원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제7조 (전보 기준 공개) 전보주관 교육지원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띄어쓰기 수정
제9조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의 근무기간 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의 근무 기간 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띄어쓰기 수정
부칙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6 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7 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연도 수정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산구 대조표

현행(2026학년도)	개정안(2027학년도)	개정 사유
2026 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2027 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연도 수정
차례 제9장 사립 특수학교 교사 특별 채용	차례 제9장 사립 특수학교 교사 경력경쟁채용	문구 수정
제8조 (전보기준 공개) 교육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제8조 (전보 기준 공개) 교육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띄어쓰기 수정
제24조 (전보) ①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 제5조 제1항 교육장 위임사항에 의거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제24조 (전보) ①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5조 제1항 교육장 위임사항에 의거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띄어쓰기 수정
제29조 (전형응시자격) ③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 2026 학년도 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을 준용한다.	제29조 (전형응시자격) ③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 2027 학년도 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을 준용한다.	연도 수정
제39조 (종류 및 방법) 사립특수학교 의 폐교·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사 발생 시 또는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 전형을 거쳐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39조 (종류 및 방법) 사립 특수학교 의 폐교·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사 발생 시 또는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 전형을 거쳐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띄어쓰기 수정
제40조 (대상 교사) ① 서울 시내 소재 사립특수학교 에 근무하는 교사 중 경력경쟁채용 임용 예정일 현재 현임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0조 (대상 교사) ① 서울 시내 소재 사립 특수학교 에 근무하는 교사 중 경력경쟁채용 임용 예정일 현재 현임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띄어쓰기 수정
제41조 (경력경쟁채용시기)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교사로의 경력경쟁채용은 교사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당해 학년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경력경쟁채용 시기)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교사로의 경력경쟁채용은 교사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당해 학년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 수정
부칙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6 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7 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연도 수정